
KB손해보험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

(개인거주자용)

※ 본 내용은 기존 KB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와 KB손해보험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 KB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실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.

I.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

1.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

- (1) KB 손해보험 주식과 KB 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.
- (2)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.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KB 금융지주 주식의 1 주당 48,676 원임. 양도소득기본공제로 연 250 만원 공제 가능함.
- (3) 양도차익에 대하여 22%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됨. 다만, 대주주(지분율 1% 이상 혹은 시가총액기준 25 억원 이상인 주주)인 경우로서 주식보유기간이 1 년 미만이라면 33%(지방소득세 포함)의 세율이 적용됨.
- (4) 양도소득세를 2017 년 11 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예정신고 납부해야 함.

2.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

- (1) KB 손해보험 주식과 KB 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가액의 0.5%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됨. 주당 양도가액이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의미함.

- (2)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식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한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.
- (3)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경우에는 2017년 11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함.

II. 유의사항

- 1.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해야함. 다만, 주주님께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2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는 않을 것임.
- 2.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,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길 바람.
- 3.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바,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-682-1951(KB 손해보험 자문법인(어울림 세무회계))로 문의 바람.